



하루 30분 지각의 효과

티 안나게 선진국형 삶 살기, 개인적 효과를 중심으로

안재현

sogosonnet@gmail.com

Submitted 22 November 2019

개요

지각은 13세기부터 내려온 개념이면서도 개인간 관계 때문에 현대사회에 돌출지점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개인과 단체, 개인과 회사 간 지각은 현대사회에 들어 새로 형성된 관계다. 그럼에도 지각과 처벌은 개인과 개인 간 관계로 해석되고, 오로지 개인의 잘못으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개인 간 관계와 달리 나머지 관계는 권력차가 존재한다. 그것은 실체가 없기도, 경제적 주도권을 갖기도, 의결권을 빼앗기기도 한다.

사회는 변한다. 그리고 개인도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술의 발전, 경제 상황의 변화, 복지 상황의 변화로 발생한다. 30분 지각은 언제, 어느곳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대상은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진다. 인권과 권리 보호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각을 효용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이 논문에서는 지각을 효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특히나 대한민국 근로자의 지각과 불규칙적 시간 누적이 선진국형 근로여건에 미달된다는 신호로서 해석될 단초를 제공한다.

키워드: 지각, 휴식, 시각, 시간, Tardiness, Lateness

Introduction

시각과 지각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수 세기에 걸쳐 진화했다. 시간의 기원은 사람마다, 종교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시간은 빅뱅 이후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낮과, 밤 또는 시간이라는 계산가능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시각 또는 지각이란 개념이 존재했다고 설명하긴 어렵다. 지각이란 상호간 약속에 의해 정의되며, 그 약속은 대중들이 합의할 수 있는 모종의 계측 단위가 존재한 이후에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의 역사는 시간 계측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고 추정 가능하다[1].

지각 이전에 인류는 시간을 계측하는 장비를 만들고, 이를 시계라고 불렀다. 고대의 하늘시계(Astrolabe)는 시간이 지나 물시계(Clepsydra)나 해시계로 발전했고, 이집트, 중국, 인도, 그리스, 로마 등에서는 모래시계나 향시계처럼 자원을 소모하며 보다 정밀하게 시간을 계측하려 했다[2].

그렇지만 당대의 시간은 지각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어려웠다. 지각이라는 용어가 형성되기엔 대중의 문제의식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당시 시간 측정 방식은 오차가 커서 부정확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밀접하게 생활했다. 지각은 약속을 어길때 발생한다. 그렇지만 고대의 사회생활은 약속과 만남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보다는 타인의 거주지를 침입하듯 이동하고, 상대의 존재(existence)를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결국, 고대 대중들에게 지각이란 개념은 형성되기 어려웠다. 지각은 약속 이후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약속은 다수가 동의 가능한 계속 기준이 있을 때부터 형성될 수 있는 공통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협의가능한 시간 계속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초의 공통시간은 공공시계가 등장한 13세기부터 등장했다[3].

기계식 시계의 대중화 이후, 사람들은 측정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14세기 철학자 니콜라스 오레스무스는 그의 서적에서 "우주는 신이 창조해낸 거대한 시계 장치로서 모든 톱니바퀴들이 아주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표현을 사용한다[4]. 현대 학자들은 그가 기계식 시계에 빗대어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류가 자연을 기계 장치와 정밀함으로 해부하려는 태도의 등장을 대변한다고 해석한다.

지각(tardiness)이라는 용어는 1608년 최초로 등장한다[5]. 이 용어는 '늦다'라는 프랑스 고어인 *tardif*에서 유래했으며, *tardif*는 12세기에 등장한 용어다. *tardif*의 형성 시기와 최초의 공공시계의 등장은 시간상 유사하다. 게다가 두 가지는 모두 프랑스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늦는 현상을 의미하는 지각이 정밀 계속 장비가 등장한 이후부터 함께 형성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Figure 1: 위크래프트3에 등장하는 타운홀(townhall) 건물. 여기서 농노(peasant)를 생산할 수 있다. 타운홀에는 시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콜 투 암즈라는 스킬을 사용하면 농노들이 타운홀에 모여 의용군(militia)으로 변신한다. 콜 투 암즈는 농노들을 특정 시각에 집결시켜 군인으로 징집한다.

지금까지 시간과 지각에 대한 기원을 이야기했다. 이제 본 논문은 30분 단위의 지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것이다. 30분이라는 단위는 경험적 숫자다. 그렇지만 이 단위는 정황상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분석된다.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20분 내지 40분을 지각 범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업장에서는 이러한 크기의 지각이 사회적 손실 비용이 적다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인용으로 요약 가능하다. "30분 지각은 용서받을 수 있다"[6][7].

지각의 정의

지각은 약속시간에 늦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행위다[8].

지각의 언급

약속은 지각이 발생하기 위한 사전 조건이다. 약속은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시간 엄수를 요구한다. 따라서 약속을 어기는 행위인 지각은 산술적 규칙 위반으로 발생한다.

그렇지만 지각의 형벌은 대체로 주관적이다. 이것은 지각이 약속 이후에 발생하는 일이며, 약속은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각 때문에 신뢰를 잃는가 하면,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지각에 대한 처벌은 그 발생의 객관성과 달리 편차가 크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각은 행위자 주변 사람들에게 불성실하다는 인식을 준다. 잦은 지각은 대인관계나 업무에서 불이익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키운다[9]. 동경대학의 하시모토 타케히코 교수는 동 학교의 회지인 탄세이(Tansei)에서 “19세기 일본은 철도, 공장 및 학교와 같은 시스템이 일본인의 시간 관념을 바꿔놓았다”고 언급한다. 그는 일본이 철도 사고 및 처벌 목록을 시작으로 일본 사회 속 시간 규율을 점진적으로 형성했으며, 시간 엄수와 전문성의 태만을 연결시켰다[10]. 그는 산업 사회 이후부터 업무 수행과 그 시작 시간의 엄수는 업무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었음을 지적한다.



Figure 2: 윌리엄 후이센 장교. 그는 도쿠가와 시대 일본인이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 불편하다는 기록을 남겼다.

현대의 입장 일부는 지각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상습 지각시 징계 대상이 되며, 보수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11]. 2011년 미국 텍사스 노동위는 고용인의 지각으로 인한 해고가 업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이므로 직원이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12].

결국 현대 업장과 법률은 근로자의 상습적인 지각을 경제적 손실로 해석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도 지각의 순기능을 언급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지각의 순기능과 효과를 최선을 다해 언급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국팔도 4천만 지각자들의 미안한 마음과 지각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부채로 남아 효용을 따질 기회를 영영 갖지 못 할 것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지각을 조명해보려는 노력은 다수의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 쉽사리 좌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Research

개인대 개인

개인대 개인은 지각 발생시 처벌과 용서 수준이 편차가 심하다. 따라서 개인 대 개인 간 지각의 발생과 처벌은 본 논문이 조사할 수 있는 연구 범위를 초월한다.

개인대 단체

지각에 대한 처벌은 ‘집단’이라 부를 수 있는 규모부터 사회적 충격을 일으킨다. 한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징수하는 단체가 물의를 일으켰었다[13]. 이 집단은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30% 이자를 징수하고, 지각비를 2시간 당 1,000원으로 책정했다. 단체는 고교시절 일진이었던 한 청년이 유도부, 태권도부 활동을 했던 이들을 모아 5명 규모로 일한 사례다.

개인과 단체는 흔히 스터디 같은 비영리 수단으로 만난다. 이들은 흔히 ‘지각비’라는 것을 걸어 지각에 패널티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구성원이 문제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법은 일반적으로 다수에 의사에 의해 결정된 규칙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한다. 만약 개인이 단체간 교섭, 특히 지각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개인은 재산권이나 평등권 침해로 해당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다.

개인대 회사

커리어 빌더의 조사에 의하면, 29%의 근로자들은 지각이 주기적이지 않는 한 커리어에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14]. 또한 지각에 대한 처벌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언급한다. 사업주는 지각비 외에도 삭감 명목의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레진코믹스는 2년 4개월 동안 계약 작가로부터 걷은 지각비 3억4천여 만원을 급여 미지급으로 계산하고, 지연 이자와 함께 돌려준 사례가 있다[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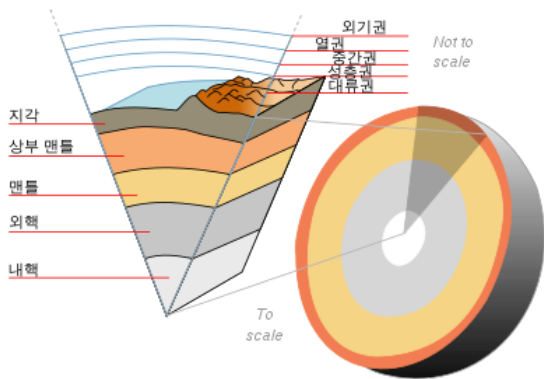


Figure 3: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각 위에 올라가 있다. 지각은 인류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다.

결국, 지각의 처벌은 그것이 상습적일때만 가능하며 개별 횡수로 처벌을 내리는 일은 불법이다.

이 논문은 30분이라는 시간이 지각으로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간격이라고 전제했다. 이 조항은 근로자들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을 기회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회사는 이것을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할 수 있게 한다. 이 지점에서 손실되는 신뢰는 사회적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30분이라는 시간 단위는 경제적으로 효용을 산출할 수 있는 단위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손실을 계산하는 대신, 30분

지각이 발생할 때 축적되는 시간의 누적치와 경제 효과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할 것이다.

Results

결과

개인이 일주일에 두 번, 30분씩 지각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앞서 주기적인 지각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두 번은 약 40%의 확률로 그 발생이 규칙적이라고 해석하기에는 토론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노동인구는 365일 중 약 240일 가량을 근무한다. 이때 한 근로자가 30분씩 일주일에 두 번, 96일을 지각하면 약 2,880분이 생기고, 시간으로는 48시간. 근로 시간으로는 약 6일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일주일에 두 번, 30분씩 지각하는 사람은 1년에 6일간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는 셈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인 15일의 40%에 해당한다. 물론 30분은 6일과 동일하지 않다. 6일을 내리 쉴 수 있는 시간과 30분이라는 구간 휴식은 자유시간 내 개인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각 30분도 효용이 있다. 지각자는 업무 시작 이전에 부족했던 잠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다. 또는 전날 더 늦게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각자는 아침을 더 먹을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모닝 커피를 기다리며 하루 업무와 신체 리듬을 다잡을 수 있다. 만약 30분이라는 시간을 준수하는 일도 어려워 촉박하여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날에는 교통비를 추가로 지출하며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Figure 4: 지각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으로 해석됐다. 그렇지만 이것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각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필자는 지각이 싫다. 지각하는 사람들은 사과를 많이 해야 한다. 사과할 대상이 없는 지각이 가장 조용하고 매너 좋은 지각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사회적 효과

휴가가 나면 유희시간이 생긴다. 휴가 기간은 동일 기간 평시보다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지각으로 확보한 유희 시간 6일은 평시보다 큰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선 30분 지각이 6일 휴가와 동일하다고 계산한 다음, 추가 휴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이 가치에 자율적인 감소 요인을 적용하는 일은 시도 가능하다. 이제 지각으로 확보한 6일의 시간을 휴가라고 가정하고 경제적 효용을 계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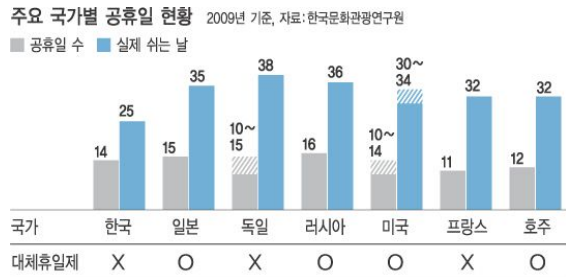


Figure 5: 주요 국가별 공휴일[] 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휴일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5~13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통계청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는 1,963만명이다[17]. 2019년 대한민국 직장인의 여름 휴가비는 평균 98만원으로 조사됐다[18]. 2010년 프랑스의 여름 휴가 예산은 1,945유로다[19]. 1유로에 약 1,300원 환율을 적용했을 때, 프랑스 여름휴가 예산은 약 254만원이다. 프랑스의 여름 휴가비 조사 결과가 9년 전에 조사됐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여름 휴가 지출비와 비교했을 때 약 38% 수준이다. 반면 프랑스와 대한민국 GDP는 약 59% 수준이다. 2017년 대한민국 GDP는 1.531조 미국 달러, 프랑스의 GDP는 2.573조 미국 달러다. 결국 대한민국 대비 프랑스 휴가비는 국민총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크게

모자란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휴가비를 산정하면, 프랑스 수준의 여름 휴가비는 약 149.8만원으로 산정 가능하다. 이는 2019년 대한민국의 여름 휴가비 통계 조사 결과보다 51.86만원이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하며, 임금 노동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 약 10조1천8백억 원의 추가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모의 실험결과 나타났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급여대비 기본생활비가 다르다는 비판도 할 수 있다. 여가에 쓸 수 있는 소득비가 달라서 여행비 차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편앤드 마이크로는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요소를 감안한 지니계수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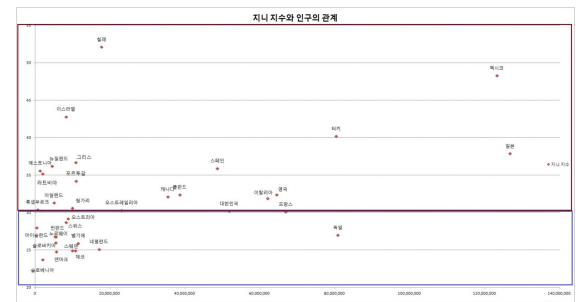


Figure 6: 빨간 상자 위에 있는 국가는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 파란박스 속 국가는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낮은 나라. 프랑스는 대한민국과 같은 선 위에 있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휴가비 차이가 크다.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법정 공휴일이 두 배 차이 난다. 프랑스는 30일, 대한민국은 15일이다. 수치상 비약이 다소 존재하지만, 유희 시간 차이가 여가 비용 차이로 이어지는 논리는 충분히 전개 가능하다.

업장에서 근로자의 지각이 지각이 아니라는 주장

[Figure 5]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휴일은 선진국에 비해 5~13일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은 30분 지각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유희 업무 기간 6일과 근접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주장했을 때, 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휴가가 모자란다. 그리고 그 간극은 비주기적 지각으로 인한 유희일 6일과 기간이 유사하다[21].

한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해서 선진국의 모든 면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선진국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는 엄밀히 존재하고, 대중들이 선진국 국민의 이미지를 공통 심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선진국 국민의 생활 양식을 일반화 가능하기 때문이다[22].

현재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국민소득을 1만 달러 상승시켜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했다. 그렇지만 소득과 달리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선진국형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배하다[23][24]. 이 주장은 소득대비 복지비용 지출과 근로여건 지표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선진국 7개국에 견줘 311시간이나 많다”고 지적한다[24]. 311업무시간은 약 38.87일 업무일로 환산 가능하며, 이는 앞서 보았던 6업무 시간보다 약 6.48배 많은 수치다. 결국 하루 30분 꼴로 발생하는 불규칙적 지각은 개인의 과오로 해석될 소지 뿐 아니라, 소득 수준 대비 근로여건 지표상 형태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병철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하고 무한한 자기착취를 실행시킨다[25]. 현대사회는 규율을 만들고 부정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은 사회 체제의 합리성을 의심하거나 재고하는 대신 개인의 욕망과 무능을 지적한다. 지각이 개인적 과오라는 믿음은 단어의 기원과 함께 출발했다. 그렇지만 사회와 개인, 기업과 개인간의 지각은 현대사회의 도래로 새로 발생한 관계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발생한 관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통념으로 지각을 해석한다. 이 해석에는 의심이 없고 물음이 없다. 업장에서 근로자의 지각이 지각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회 문제로 승화시키기엔 다소 무리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시도된 바 없기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Discussion

지각을 하지 않으면 6일의 추가 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그렇지만 하루 30분씩 불규칙적으로 지각하는 행위는 용인된다. 이것은 도덕상으로는 말이 되지않 수치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이 개인에게는 약속시간 엄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단체 및 조직에는 지각에 대한 효용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Conclusion

지각은 13세기부터 내려온 개념이면서도 개인간 관계 때문에 현대사회에 돌출지점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렇지만 개인과 단체, 개인과 회사 간 지각은 현대사회에 들어 새로 형성된 관계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도,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개인 간 관계와 달리 나머지 관계는 권력차가 존재한다. 그것은 실체가 없기도, 경제적 주도권을 갖기도, 의결권을 빼앗기기도 한다.

사회는 변한다. 그리고 개인도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술의 발전, 경제 상황의 변화, 복지 상황의 변화로 발생한다. 30분 지각은 언제, 어느곳에서도 있었다. 그러나 대상은 달라지고 상황도 달라진다. 인권과 권리 보호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비주기적 30분 지각은 1년에 약 6일간 휴가를 부여받는 효과가 있다. 이 시간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면 경제적으로 약 10조1천8백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cknowledgements

이 자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음.

References

- [1] 타임 서울 에세이, 『시간이란 무엇인가? Part.1』, http://www.timeseoul.com/bbs/board.php?bo_table=sub02_01&wr_id=21&page=4, 2012.
- [2] 위키피디아, 『물시계』, https://en.wikipedia.org/wiki/Water_clock.
- [3] 미지북스, 『시계와 문명 : 1300~1700년, 유럽의 시계는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https://mizibooks.tistory.com/64>, 2013.
- [4] 위키피디아, 『니콜 오렘』, https://en.wikipedia.org/wiki/Nicole_Oresme
- [5] 메리엄 웹스터 사전, 지각(Tardiness),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tardiness#h1>

- [6] 그레이스 메리딩어, 모두에게 공평한 직원 출근 강령, <https://wheniwork.com/blog/how-to-write-an-employee-attendance-policy/>, 2018.
- [7] 익명 사용자, 대학 15분 지각이랑 40분 지각이랑 똑같아?, <https://www.instiz.net/name/24606391>, 2018.
- [8] 위키피디아, Tardiness, <https://en.wikipedia.org/wiki/Tardiness>.
- [9] 나무위키, 지각, <https://namu.wiki/w/%EC%A7%80%EA%B0%81>.
- [10] 하시모토 타키히코, The birth of tardiness, or the origins of time discipline in modern Japan, https://www.u-tokyo.ac.jp/en/about/publications/tansui/11/birth_of_tardiness.html.
- [1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2018 개정본.
- [12] 러셀 캐이어, Texas Employee Violating Attendance Policy Denied Unemployment Benefits, <https://www.texasemploymentlawupdate.com/2011/07/articles/unemployment/texas-employee-violating-attendance-policy-denied-unemployment-benefits/>, 2011.
- [13] 김아사, [아무튼, 주말] 年 이자 5000%... 소셜미디어 통한 '학생 사채' 판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8/2019030801977.html, 2019.
- [14] 라단 니카라반, Late to work? It could get you fired, <https://www.careerbuilder.com/advice/late-to-work-it-could-get-you-fired>, 2017.
- [15] 배선영, 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논란 인정·공식 사과 "지각비 3억, 돌려줄 것",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23>, 2018.
- [16] 정유림, '갑'의 횡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눈물짓는 '청년 알바생',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2464>, 2014.
- [17] 박영삼,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차이' 짚어보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609.html#csidx1022aac9f4cbbb94f59a72ed7365ae, 2017.
- [18] 매일경제 디지털뉴스국, 직장인 올해 여름휴가비용 평균 98만원 예상...8월 상반기 집중,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376464/>, 2019.
- [19] 임소라, 휴가시즌, 유럽인들은 자국여행을 선호, <https://kto.visitkorea.or.kr/kor/notice/data/mast/global/yrsj/board/view.kto?id=392771&isNotice=false&instancelid=281&rnum=802>, 2010.
- [20] 김민찬 이슬기, 한국을 뒤흔든 '가짜 통계' 해부 ② 양극화,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 2018.
- [21] 나무위키, 선진국, <https://namu.wiki/w/%EC%84%A0%EC%A7%84%EA%B5%AD#s-4.1>.
- [22] 시사뉴스 앤 편집국, 선진국형으로 변하는 중국 소비자들, <http://www.sisanew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 2016.
- [23] 오용연, 국민소득 3만 달러...우리도 선진국일까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402/94843575/1>, 2019.
- [24] 이순혁 조계완 방준호,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삶의 질 선진국'은 먼 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4714.html#csidx128d9a90ba6be6b84ed48dfe8ab659, 2019.
- [25] 문학과지성사, 피로사회 소개, <http://moonji.com/book/6587/>, 2012.